



영국, 보험계약 예금보호한도 확대

채원영 연구원

요약

■ 영국 예금보험기관은 지급기의 연금보험과 순수보장성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예금보호한도를 청구금액의 90%에서 100%로 확대하였음.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은 생명 및 연금보험회사 파산 시 보상금액과 운영비용을 소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산업 내 경쟁구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영국 예금보험기관인 FSCS¹⁾는 파산보험회사의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자문 및 모집업자의 불안전판매, 사기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실금액을 보호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순수 보장성보험 등이 해당되며, 손해보험에는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이 해당됨.
 - 신용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및 재보험은 제외됨.
- 예금보험 청구권자는 개인 및 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됨.
- 영국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청산하는 대신 계약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이 전조치를 취하므로 파산된 보험회사는 대부분 손해보험회사임.²⁾
 - 2001년 FSCS 설립 이후 2014년 7월까지 27개 손해보험회사와 2개의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13억 파운드임.³⁾
- FSCS의 보상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각출한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형은행 등의 파산 시 외부차입 등으로 자금조달 후 부실을 초래한 납부그룹⁴⁾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상환함.

1)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파산 시 최후의 보상을 담당하는 기구로 2001년 12월 1일 통합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FSCS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파산 금융회사의 잔여재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2) 류근옥(2010), 「보험회사 파산 시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의 보험금지급 사례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1호.

3) 예금보험공사(2014. 7), 「영국의 금융소비자 손실보상제도」, 『KDIC 조사분석정보』.

4)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등에 따라 기능별(제조, 판매·중개)로 분담금 납부그룹을 세분하고 있음. 2016년 현재 예금수취 금융회사, 손해보험회사, 생명·연금보험회사, 손해보험 모집업자, 생명·연금보험 모집업자, 투자중개업자, 주택금융회사(Home Finance Intermediation), 투자회사 등 8개 납부그룹으로 나뉘어 있음.

■ FSCS는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3일부터 보험계약 예금보험한도를 청구금액의 90%에서 100%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음.

- FSCS는 장기계약인 생명 및 연금보험계약을 부분 보호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계약자들의 손실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호한도를 변경하였음.
- 지급기 연금상품과 사망·장해를 보장하는 순수 보장형 상품,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등의 경우 기존에는 보장금액의 90%까지만 예금보호 대상이었으나 100%로 확대됨.
 - 지급기 연금상품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보험계약자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해당 상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서 연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망·장해 등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금 수입을 대체할 수단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적립기 연금상품과 순수 보장부분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상품은 현행 보장비율 90%를 유지함.⁵⁾
 - 해당 상품들은 보험회사 파산 시 지급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들이 보호대상 보험이외의 방법을 통해 소득을 대체할 수단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표 1〉 영국 예금보호한도 변경 전, 후 비교

구분	제도 변경 전	제도 변경 후
예금보호한도 100%	· 의무보험	· 의무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사망·장해보험 · 지급기의 연금보험 ¹⁾
예금보호한도 90%	· 손해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 예금보호한도 100% 해당상품과 예금보호제외 상품을 제외한 보험상품
예금보호 제외	· 신용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 신용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주: 1) 적립기의 연금보험은 현행 보장비율 90%를 유지함.

■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보상비용(compensation cost)과 규제준수비용(compliance costs)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산업 내 경쟁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함.⁶⁾

- 예금보호 한도 확대로 생명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자에 대한 보상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08~2013년 생명·손해·연금보험 실적기준으로 보험회사 파산 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비용 증가분은 예금보호한도 확대 전보다 평균 700만 파운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독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보험계약 공급 및 수요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험산업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kiri](#)

5) 해당 상품 중 순수 보장부분은 보장금액의 100%를 예금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저축 부분의 경우 90%까지만 인정함.

6) Bank Of England(2015. 4), "Policyholder protection", Policy Statement, PS5/15.